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9. 7 선고 2022가단34172(본소), 2023가단1193(반소) 판결
[구상금 · 면책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피고(반소원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5,42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2022.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본소에 대한 원고 청구취지는 이를 면책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수출화물의 고박작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5. 27.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 20. C이 고박작업을 수행한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이 선박 이동 중 컨테이너에서 이탈하여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화물주인 D과 해양운송업자인 E에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었고, 원고는 C의 보험자로서 2020. 7. 6.부터 2021. 6. 11.까지 D과 E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93,465,759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8. 8. 28.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하면4021, 2017하단4021호, 이하 ‘이 사건 파산절차’라 한다).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등의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도비업체¹⁾로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베이스판에 견고하게

고정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70%에 상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위 93,465,759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65,426,031원(= 93,465,759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주장 청구원인 채권은 부존재하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

나. 본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2017. 1. 20.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가 그 이후인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2018. 8. 28.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 구상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 주장 구상금 채권이 피고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 주장 구상금 채권을 피고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의 출재행위는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 이후에 이루어졌고, 원고 등이 위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 등을 청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원고 주장 구상금 채권 등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 구상금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 주장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게 되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본소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 청구취지 채권을 면책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본소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3. 5.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반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는 각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